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 - 104호>

2021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공모

‘2021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2월 3일

보건복지부 장관

순 서

I. 사업개요	3
II. 신청 및 접수	7
III. 사업요청내용	8
IV. 수행기관 선정방안	13
V. 사업비 편성 및 지급·관리	15
VI. 세부사항 문의처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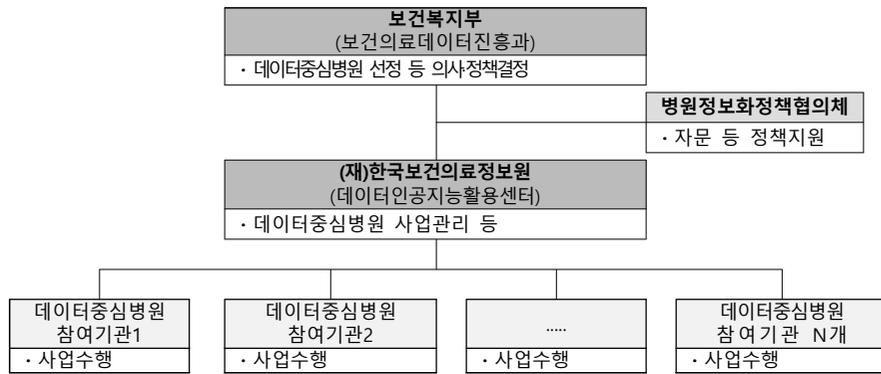
I 개요

1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임상 빅데이터 활용 및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 제약사, ICT 기업 등 산·학·연·병 협력체계 구축·지원

□ 추진체계



○ 각 기관별 주요역할

구 분	주 요 업 무
보건복지부 (총괄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관리 총괄 • 사업 관련 정책 수립 및 예산 승인 • 성과관리 및 결과 확인 등
(재)한국보건정보정보원 (수행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추진 및 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 지원사업 대상 컨소시엄 선정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신청서 접수 및 사전검토, 처리 4. 신규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예산집행 및 관리 5. 사업수행의 감독 및 사업비 정산·환수 6. 사업 결과보고 및 성과 활용 촉진 등 사후관리 • 추진사업 실적·운영현황 정기보고 및 최종 사업결과 보고(복지부)
데이터중심병원 참여기관 (협력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추진사업 계획 이행 • 추진사업 실적·진행현황 중간보고 및 최종 사업결과 보고(성과포함) • 정부보조금 지원신청 및 관련 서류제출

2 공모 개요

□ 공모 일반사항

- (공 모 명) 2021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공모
 - * 이하 '데이터 중심병원'

○ (사업내용)

- 전산장비 도입보장을 통한 안전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환경 구축
- 데이터 보안·표준화·정제 등을 통해 표준보급 확산 및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
- 인공지능 신약개발, 암 데이터, 주요 질병 등 분야별 데이터 특화 추진
-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셋 정의 및 신기술, 인공지능 등 개발을 위한 연구 추진

- (참여자격) 규모*, 데이터 보유량, 관리·활용역량** 등을 갖춘 의료기관

* 공동응모기관 내 누적 환자수 합산 100만명 이상 (가점 없음, 붙임1 참고)

** 既보유 데이터의 표준화·활용, 특화데이터 구축 및 데이터 연구·활용역량 등

※ 2020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사업참여기관은 신청 불가

- 전산장비의 공동활용계약을 맺거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리위탁 등 적절한 계약을 맺은 타 기관과의 컨소시엄 형태 공모 허용

- (신청단위)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 컨소시엄 유형 예시: 상종 + 전문병원, 상종 + 종병 + 전문병원 등

- 컨소시엄 내 의료기관 환자 수 합산 시 100만명 이상인 경우만 응모 가능

※ 참여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등의 사용자 수는 불포함

- 컨소시엄 내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참여 필수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959호> 제4기 1차년도 전문병원 지정결과 참고

- 컨소시엄은 주관·참여기관과 협력기관*으로 나누어 구성 가능
 - * 주관·참여기관은 의료기관만 가능, 의료기관 외 헬스케어·IT 기업, 공과대학 등은 협력기관으로 참여 (단, 협력기관은 예산교부 불가)

○ (선정규모) 2개소

* 예산 범위 및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금액) 사업계획서 상 소요비용의 50% (최대 1,500백만원)

- 의료기관은 현금 또는 현물(인건비 등)으로 매칭(원내 자산 임대료 불인정*)

* 국비지원금 대비 10% 이상은 자기부담금의 현금 부담

** 예) 원내 공간 임대료(x) / 원외에 별도 공간을 마련할 경우 부동산 비용(o)
원내 既 도입장비 활용·임대비용(x) / 외부로부터의 장비 구매·임대비용(o)

○ (지출범위) 최초 신청서에 포함된 사업계획서 상 지출계획을 명시, 모든 지출은 동 사업목적으로 활용되는 것만을 인정

- 지출계획이 변경될 경우, 지원센터에 해당 변경 내역을 사전에 제출하고, 승인 이후 원인행위를 진행 필요
- 독립된 회계법인을 통해 지출계획 이행점검 및 회계정산실시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 '21.12.15.

○ (추진일정)

업무단계	추진일정	주요내용
↓		
공모 공고	2.3~2.24	공고문 공고 등 공모 안내
↓		
신청서 접수	2.24 17:00	공모 신청서류 접수
↓		
선정평가	3월 4일	대면평가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		
계량 지표 현장 실사	3월 2주	기관 방문 현장 실사를 통해 계량지표 확인
↓		
요구사항 조정·협의	3월 2주	평가순위에 따라, 제안내용 및 예산 등 협의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3월 3주	심의·조정결과를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

업무단계	추진일정	주요내용
↓		
협약 체결	3월 3주	보건의료정보원, 수행기관 간 협약 체결
↓		
선금 지급	3월 4주	지원금 교부신청서 접수 후 지원금 지급
↓		
착수워크숍 개최	4월 1주	컨소시엄(병원)별 사업계획 교류
↓		
월별 워킹그룹 운영	매월	사업기간 전체 매월 1회 개최
↓		
중간보고회 개최	8월 중	사업 중간보고회 개최
↓		
잔금 지급	9월 중	중간보고회 결과에 따라 잔금 지급
↓		
완료보고서 제출	12월 중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		
성과보고회 개최	12월 중	성과보고회 참석·발표
↓		
사업비 정산·환수	12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제출, 위탁 정산 후 잔액/불인정금액 환수, 잔금 미지급

○ (성과평가)

- (평가지점) 사업종료('21.12.15.) 이후
- (평가지표)
 - ① 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 이행 평가
 - ② 지정감리법인의 감리수행*보고서 평가
 - * 데이터 실사 검증 및 사업수행감리(DB설계, 데이터품질, 표준화 등) 등
 - ③ 기타 데이터 중심병원 사업수행실적 등
- (평가방법) 복지부에서 위촉한 평가위원단이 사업 산출물(결과 보고서, 감리보고서 등) 및 데이터 현장실사 등을 통한 평가
- (평가결과)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병원 선정 및 차년도 추가 지원금 교부 여부 결정

II 신청 및 접수

□ 모집공고

- (공고기간) '21. 2. 3.(수) ~ '21. 2. 24.(수), 22일간
- (공고방법)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재)한국보건 의료정보원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 홍보

□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신청공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1부(컨소시엄 참여기관 포함)
- [서식1] 사업참여신청서 1부
- [서식2]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설명 발표자료(PPT) 각 1부
- [서식3] 평가지표별 세부 붙임 자료 1부.
-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각 1부
- [서식5] 협조사항이행확약서 1부
- [서식6] 자부담금 출자확약서 1부
-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방법)

- 공문, 제출서류 파일은 PDF 파일로 변환하여 외부 파일보관 서비스에 업로드 후, 다운로드 링크를 이메일(healthdata@k-his.or.kr)로 제출
- * 최종 선정기관은 추후 기관 직인이 날인된 서류 원본 일체를 필수 제출

○ (제출기간) '21. 2. 24.(수) 17:00 (링크 제출 e-mail 수신시간 기준)

- * 제출 마감일 18:00까지 각 제출자에게 제출서류 접수증을 e-mail로 송부 예정 (미수신 시 유선으로 필히 확인)

III 사업요청내용

□ 데이터 활용환경 구축

- 전산장비 도입·보강을 통한 안전한 의료데이터 활용환경 구축
- 의료데이터 활용연구를 위한 연계기반 마련

<데이터 중심병원 표준지원 내역>

분류	항목	예시
I. 전산장비(H/W) 도입·보강	데이터 생산장비	디지털 의료영상 기기, 신체신호 측정기기 등
	데이터 관리장비	스토리지(저장장치), 백업장치, DB서버 등
	네트워크·보안장비	방화벽, 망연계장비, 5G 중계기 등
	범용 전산장비	서버, 워크스테이션, 모니터, 키보드 등
II. 소프트웨어(S/W) 도입·보강	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	DBMS, CDW 소프트웨어 등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SAS, SPSS, R Studio, Tableau 등
	시스템·기반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웹서버, 가상화 서버 등
III. 인력채용·인건비	의료데이터 관리인력	데이터 관리, 생산, 표준화, 보안 등 인력
	의료데이터 분석인력	데이터 분석, 연구 인력
IV. 구축사업, 컨설팅	시스템·데이터 구축, 정산회계, 컨설팅 비용	외부 위탁사업비
	빅데이터 분석지원 포털 구축	데이터 분석포털(WEB) 구축 등
V. 운영비	병원 내 지원조직 운영비 등	연구윤리, 연구지원, IRB 등

* 위 내용은 참고사항이며, 이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각 의료기관의 여건 및 기술현황에 따라 신청.

□ 데이터 거버넌스

▪ 데이터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수립

- 컨소시엄(간) 내 **데이터 전담위원회 등 수립**

○ 부원장급 이상의 전임 CIO 선정 및 지정

○ CIO 지원조직인 데이터 전담조직 설치

- 데이터 비식별 제공·관리를 위한 전문(전담)인력 확보

○ 보건의료 데이터 제공·활용을 위한 절차 등 거버넌스* 구축·강화

* 데이터 관리·제공심의 등을 위한 데이터 전담위원회 등

○ 데이터 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여부

* 임상연구보호프로그램(HRPP), 환자보호프로그램

□ 데이터 정보보안계획

○ 데이터 보안을 위한 망분리, 폐쇄분석망 구축 등 추진

○ 정보보안수준(ISMS, ISMS-P 등) 향상 추진

□ 데이터 활용기반 마련

■ 데이터 활용기반

- 데이터 접근·제공을 위한 빅데이터 지원·분석포털* 1개 이상 구축

* 분석포털 등으로 지원된 데이터의 검색 및 제공·활용에 대한 건 수 등 이용현황 보고 의무

○ 데이터 공동활용을 위한 공통 표준 CDW 모델 마련 및 적용

○ 데이터 보안·표준화·정제 전문인력을 통한 연구기반 마련

○ 의료기관 데이터 접근·제공을 위한 빅데이터 지원·분석포털* 구축

* 의료데이터 등을 안전하게 연계·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포털로 이용자가 데이터를 검색하고 연구목적에 따라 승인 후 추출이 가능한 환경

□ 분야별 특화데이터 구축

■ 질환/인공지능 등 특화데이터 구축 추진

- 컨소시엄 내 특화데이터 4종 이상 신규 구축* 추진

* 구축 : 데이터 DB설계 및 구현이 완료된 단계로 데이터 추출 및 활용할 수 있는 완성 단계

- 전문병원이 참여하여 전문질환(안과, 이비인후과, 재활(척추·관절)) 특화DB 구축 및 활용방안 등을 추진

○ 신생물·순환계통·호흡계통 질환 또는 질환·연령·환자군별 특화된 데이터 개발·활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 신약개발, 의료기기, 인공지능 등 관련 연구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세트* 특화

* 영상, 증영병리영상, NGS검사데이터, 기록지세트 등

□ 의료데이터 개방 및 활용연구 지원

■ 데이터 활용연구지원

- 데이터활용연구과제 데이터활용 연구결과보고서* 20건 이상 제출

(다기관 공동연구 5건, 산업계와의 공동연구 5건 이상 포함)

* 연구결과보고서는 '22년 6월 30일까지 제출

■ 데이터 개방

- 특화DB 관련 메타데이터, 샘플데이터, 항목정의서 등 데이터 5건 이상 제공*

* 포털시스템을 통한 제공 권유

○ 제출한 활용시나리오 연구 추진을 위한 의료데이터세트 정의 및 구축

○ 제출한 활용시나리오 연구 추진 심의 절차지원

○ 데이터 제공 후 성과관리를 통해 활용성과(논문, 포스터 발표 등) 증빙 제출

○ 진료·연구 목적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산업계(제약사, 인공지능 기업 등)와의 데이터 연구활용 지원 의무

- 기관 간 다기관공동연구 5건, 산업계와의 공동연구 5건 이상 의무

○ 의료데이터 활용을 확산하기 위해 임상 빅데이터의 연구수요가 높은 질환에 대해 항목정의서 및 메타데이터, 사용설명서 공개 추진*

* 데이터세트 코드북(항목정의), 메타데이터, 데이터(샘플, Fake 등) 등 5건 이상 공개

○ K-Cancer DW*(22~24) 구축 사업 참여, 보유 데이터 공유·활용**, 표준화활동 지원 및 EMR 개선 협조

* 임상, 유전체 등 병원 보유 암 데이터(전체 암 환자의 70% 규모)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검진데이터, 사망통계 등과 연계·통합하여 임상·연구 활용을 위해 개방

** SNOMED CT 기반 표준 레퍼런스 세트(암5종) 도출 연구사업 협력

○ 의료AI 스타트업 등 산업체에 학습용 데이터 의무제공을 통해 신약·의료기기, AI 등 개발연구 추진 및 新의료기술 발전에 기여

□ 협조의무사항

- (데이터 공개) 사업 간 구축된 특화데이터 세트* 공개
 - * 데이터세트 코드북(항목정의), 메타데이터, 데이터(샘플, Fake 등) 등 공개 범위에 대한 제시
- (데이터사업 협력) AI 스타트업 육성, 마이헬스웨이 플랫폼 연계, 데이터 개방화지수 개발 등 임상데이터 제공 및 활용 지원
 - * 예) 의료데이터 보호·활용 기술개발, 의료기기기술개발, 마스터용어DB 등
 - * 각 병원이 보유한 데이터 규모현황 등 파악 시 자료제공 협조
- (데이터 협의체 참여) 데이터 공개, 표준화, 공동연구 활성화, 데이터 사업 협력 등을 위한 참여기관 거버넌스 적극 참여
- (데이터 중심병원 홍보) 보건복지부(또는 한국보건 의료정보원)에서 본 사업 홍보를 위한 보도자료, 컨퍼런스, 웹 게시물 등 정보 요청 시 제공·협조

□ 품질보증 방안 제시

- 데이터 중심병원 간 협업을 위한 '협의체' 등 협력 방안 제시
- 사업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제시
- 품질관리위원회에는 제안사의 사업책임자, 품질관리책임자 1인 등으로 구성
 - 사업품질 보증에 대한 책임, 범위에 대해 상세히 제시하고, 품질 보증활동에 대한 절차, 점검방법, 활동내역, 시기 등을 명시

□ 산출물 관리방안 제시

- 본 과제수행에 적용된 사업관리 방법론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를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제시
- 최종 제출 산출물은 한국보건 의료정보원 지정한 감리법인을 통해 사업감리 이행 후 감리보고서와 함께 제출

□ 수행내역 관리

- 지원 대상병원 간 착수워크숍 및 월간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사업

계획 진척 등을 교류하고, 지원병원 간 상호협력을 유도할 예정

- 수행기간 중 지출계획 등 추진상의 중대한 수행계획변경이 있을 시, 계획변경을 신청하고 승인을 득한 후 집행

□ 보고서 제출

- 보고자료(월간 워킹그룹 자료, 완료보고서 등)
- 발표자료(착수 워크숍, 완료보고회 등)
- 산출물,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
- 데이터 활용연구 결과보고서 제출
 - 활용연구 중간보고서 제출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활용연구 연구성과보고서 제출 (~'22. 6. 30.)

□ 기타사항

-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내용이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경우,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단, 협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협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IV 수행기관 선정방안

□ 공통사항

- 과제 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제안기관이 자유롭게 제안하는 방식으로 선정·추진
- 공모에 지원하는 수행기관 수가 선정 규모에 미달할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 후에도 미달한 경우 적격평가(70점 이상)를 통해 과제조정 대상 수행기관으로 선정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 작성으로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해지하며, 해당 건의 사업비를 미지급·환수함

□ (1단계) 선정평가

- (평가 실시방안)
 - 평가 점수 산정 시 최고, 최저 점수를 부여한 제안서 평가위원의 점수를 제외하여 산정함
 - 평가 점수를 토대로 최고 득점자 순으로 예비선정 대상 수행기관을 선정함
 - 평가결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 미만일 경우 예비선정 대상 기관에서 제외
- (제안서 발표)
 - 제안서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내외로 실시
 - 제안사별 사업설명 발표자* 외에 3인 배석 가능
 - * 참여 신청서의 사업책임자가 직접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선정 평가지표) 붙임 2 참조

□ (2단계) 현장 실사 및 사업계획·사업비 심의 조정

- 1단계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 선정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 사업계획 및 예산의 적정성 등을 협의 후 수행계획을 확정
- 공고문 상의 협조의무 등 지원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경우 예비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3단계) 협약체결 및 사업지원금 지급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선정된 기관은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
- (협약체결) 제출된 수행계획서에 대해 보건의료정보원과 지원협약을 체결
- (사업지원금 신청) 사업지원금은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2회 분할 지급
 - * 협약체결 후 70%, 중간평가를 거쳐 30% 지급 예정

□ 기타사항

- (현장실사) 신청서에 첨부된 증빙서류에 입각하여 선정평가를 실시 하고, 예비선정기관에 대해 현장실사*를 통해 검증 예정
- (참여제한) 선정평가 시 아래 사례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 또는 컨소시엄 전체에 대해 **탈락처리 가능**
 - ① 보건의료·건강증진 목적 외의 데이터 활용계획을 제출한 경우
 - ② 단순판매 목적*으로 데이터를 외부에 제공할 계획을 제출한 경우
 - * 활용목적에 대한 적절한 윤리적 검토 없이, 유상으로 데이터 제공 등
 - ③ '20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사업참여기관이 신규 컨소시엄에 구성된 경우
- (동점처리방안) 동점의 경우 매칭비율*이 높은 기관을 선정
 - * 사업계획서상 국비 대비 기관부담 사업비 비율

V

사업비 편성 및 지급·관리

□ 사업비 편성

- (사업지원비) 총 30억원 ...1개소 당 최대 15억원 지원
 - 사업계획 상 15억을 초과하지 않는 국비지원금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비지원금이 총 소요예산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편성사업비) 국비 + 자기부담금*
 - * 국비지원금 대비 자기부담금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예) 최소 1.5억(또는 국비지원금 대비 10%) 이상은 자기부담금의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비목별 편성기준) 붙임 3 참조

□ 사업지원비 지급

- (1차 국비지원금 지급)
 - 지급액 : 사업비 지원금의 70% 선금 지급
 - 지급시기 :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지급
 - 지급방법 : 해당 기관의 사업비 전용 은행계좌로 송금
- (2차 국비지원금 지급)
 - 지급액 : 잔여 사업비 지원금
 - 지급시기 : 중간평가 후 지급

□ 사업비의 관리

- (사업비 관리운영)
 - 사업비(사업지원비+신청업체 자부담금)는 **별도의 계좌**로 관리·운영
 - ※ e나라도움으로 사업비를 관리·사용, 사업비 정산 및 보고 등 진행
 - 사업비는 별도의 신용카드 등을 통해 투명하게 집행하되, 본 과제 추진과 무관한 목적으로 임의 집행 시 해당분 불인정 및 환수

※ 각 사업비 집행 건에 대한 증빙서류 등 상세내역을 요청할 수 있음

-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함

- (간접비 비율) 간접비* 비율은 국비 지원금액 대비 5% 이내
 - * 사업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 외에 참여기관 내규에 따라 기관에 납부하는 간접적 성격의 비용. 총 사업비 30억(국비 15억 지원) 시 보조금 75백만원 이내
- (인건비 비율) 인건비 비율은 총 사업비 대비 20% 이내
 - * 총 사업비 30억(국비 15억 지원) 시 6억 이내
- (사업품질관리) 특화DB 등 사업관리를 위한 감리용역비, 회계정산 점검을 위한 회계점검 용역비 반영 (국비 지원금액 대비 3%*)
 - (사업감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지정한 감리법인을 통해 사업 결과에 대한 감리를 이행하고 감리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회계정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정산을 이행하며, 정산보고서에 따라 사용 잔액과 불인정금액은 해당 금액 환수조치 가능
 - * 주관기관에서 총 사업비 내 국고보조금 3% 예산 책정하여 반영.
 - * 총 사업비 30억(국비 15억 지원) 시 보조금 45백만원 이내로 편성하며, 감리 용역비, 회계정산비용 등으로 집행될 수 있음
 - * 예산은 “운영비-일반수용비-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로 편성
- (사업비 정산)
 - 정산보고서 제출 시, 해당 건별 증빙자료 제출이 원칙이며, 사업비 관리 및 정산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협약체결 전 별도 안내 예정

VI 세부사항 문의처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이메일
한국보건 의료정보원 데이터인공지능활용센터	차장	이광재	02-6263-8331	surreal@k-his.or.kr
	주임	전영상	02-6263-8323	young@k-his.or.kr

※ 질문사항은 서류제출 마감일 3일 전까지 가능하며, 전화문의는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필요한 경우, 문서 또는 Email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데이터 중심병원 표준모델(안)

데이터 중심병원 표준모델(안)

① 데이터 측면

- (보유량) 누적 환자수 100만명* 이상 수준
 - * WHO 기준 사망원인 상위 20개 질병에 대해 연구 가능한 최소 환자 수 기준 (참고 : Top5 - 11.8만, Top10 - 32.4만, Top15 - 61만)
- (품질)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품질인증 Platinum Class 기준
 - * 전체 데이터 비중 대비 정합률 99.977% 이상
- (표준화) HL7(기술표준), SNOMED-CT(용어표준) 등 국제적인 표준 준수, EMR 인증

② 관리 측면

- (CIO) 부원장급 이상의 CIO(Chief Information Officer)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직속 조직 운영
- (거버넌스) 데이터 제공여부 검토를 위한 위원회 설치

③ 활용 측면

- (원내) 의료기관 내 진료·연구 목적 데이터 활용 활성화
- (원외) 기업 등 외부 협력 연구자와의 협력연구 추진

④ 생명윤리·참여자 보호 측면

- 임상연구보호프로그램(HRPP*) 설치 및 운영
 - * HRPP(Human Research Protection Program) : 의학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윤리적 연구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⑤ 보안·정보보호 측면

- (인증) 한국인터넷진흥원 ISMS-P* 등 정보보안 인증 획득
 - * Personal Information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 (망분리) 대용량 데이터를 집적하여 활용하는 연구용 PC의 경우, 인터넷망으로부터의 망분리 체계 운영 권장

⑥ 기타

- (AI) AI 개발·평가·실증연구 환경 마련
- (5G) 스마트병원 대응을 위해 5G기반 고속 무선 환경 구축

붙임2

선정평가 시 평가항목

선정평가지표			
분야	구분	배점	평가항목
사업계획 (18)	데이터 생산계획	4	· 데이터 생산계획 충실도
	데이터 관리계획	4	· 데이터 관리계획 충실도
	데이터 활용·개발계획	10	· 데이터 활용·개발계획 충실도
거버넌스 (6)	CIO	2	· 부원장급 이상의 전임 CIO 존재 여부 (CIO가 타 보직을 겸임하고 있을 경우에는 1점 감점)
	CIO 지원조직	2	· 데이터 전담조직 설치 및 별도 사무공간 확보 여부 · 데이터 처리 전담 정규직 직원 수 * 전산시스템 구축·유지·관리 인력 불인정, 데이터 분석·활용 인력만 인정
	데이터 위원회	2	· 데이터 전담위원회 설치 여부 (IRB에 기능보강 허용)
윤리·정보인권 (4)	임상연구보호프로그램	2	· 임상연구보호프로그램(HRPP) 설치 여부
	참여자 인권	2	· 병원 내 참여자 인권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여부
정보보안 (5)	망분리	2	· 연구용 PC 망분리 여부
	정보보안 계획	3	· 참여 의료기관 정보보안 수준 상대평가
데이터 (12)	데이터 품질활동계획	4	· 품질관리 조직 운영 여부 등
	데이터깊이	8	· CDW 또는 특화DB 등을 다양한 데이터로의 구성 여부 (ex.영상, 생체신호 등)
데이터 특화전략 (36)	암 질환	9	· 신생물 특화 데이터개발·활용계획 여부 (KCD 7th 기준 C00-D48)
	심뇌혈관질환	9	· 순환계통질환 특화 데이터개발·활용계획 (KCD 7th 기준 I00-D99)
	호흡기질환	9	· 호흡계통질환 특화 데이터개발·활용계획 (KCD 7th 기준 J00-J98, U04, 코로나19 등)
	전문질환 (안과, 이비인후과, 재활(척추 및 관절) 등)	9	· 안과계통질환 특화 데이터개발·활용계획 (KCD 7th 기준 H00-H59) · 이비인후과계통질환 특화 데이터개발·활용계획 (KCD 7th 기준 H60-H95, J00-J99(비염, 인두염 등)) · 재활치료기반 특화 데이터개발·활용계획 * 전문병원 참여 및 전문병원 데이터를 활용한 특화데이터 구축 추진 필수
표준화(3)	표준화 적용계획	3	· 데이터 표준적용 등 강화계획
인공지능 적용여부 (2)	AI 기반 의료기기 등 도입여부	1	· AI 기반 의료기기, 진료목적 S/W 등 도입·운영내역
	AI 기반 의료기기 등 도입계획	1	· AI 기반 의료기기, 진료목적 S/W 등 도입·운영계획

선정평가지표			
분야	구분	배점	평가항목
예상 활용 시나리오 (12)	진단·치료법 개발	3	· 진단·치료법 개발 연구계획(안)
	신약개발연구	3	· 신약개발, PMS, 리포지셔닝 등 연구계획(안)
	의료기기개발연구	3	· 의료기기 개발, 평가, 임상 등 연구계획(안)
외부 연구교류 (2)	AI,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	3	· AI, 디지털 헬스케어 개발, 평가, 임상 등 연구계획(안)
	외부 연구시스템과의 네트워킹 계획	2	· 인공지능 신약개발, 암 CRDW, 자료협조 등 계획

가산점 항목	평가 점수				최대 배점
○ 자부담 비율 (a)	a ≤ 50% (0)	50% < a ≤ 75% (0.5)	75% < a ≤ 100% (1)	a > 100% (1.5)	1.5

- 1) CIO 여부, 연구용 PC 망분리 여부는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지원기간 종료 시까지 완료할 경우 만점 부여
- 2) 데이터 중심병원 선정 이후 구축되는 인프라를 활용하여 수행할 연구들의 계획서(안)으로써, 4개 각 분야별 연구개수는 5개 이하로 함
- 3) 분야별 연구과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닌, 해당 분야 연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전처리, 심층 데이터 수집 등의 계획을 의미. “데이터 특화 전략” 지표는 세부항목 합산 결과가 9점을 초과할 경우 9점으로 반영
- 4) 평가지표별 작성방법은 [별첨] 신청서식 파일 참조

붙임3

사업비 비목별 편성기준

비 목	세 목	내 역	사용범위
1.인건비	① 보수	• 수행기관 소속의 참여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총 사업비 대비 20% 이내
	② 상용임금	•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	
2.운영비	③ 일반수용비	• 사무용품 구입비 • 인쇄비 • 간행물 구입비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전문가 자문료 • 회의비	※ 자산성내역 불인정 - 시스템개발 및 홈페이지, 범용성 전산장비(USB, 외장하드, 키보드, 마우스 등) 등 ※ 감리 용역비, 회계정산 점검을 위한 회계법인 점검 용역비 총 보조금 3% 반영 (운영비-일반수용비-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로 편성)
	④ 공공요금 및 제세	• 전기가스로 등 공공요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등 제세	
	⑤ 특근매식비	•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 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 - 야간근무자, 휴일근무자 등 급식비	
	⑥ 임차료	•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대여료 •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⑦ 일반용역비	•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수행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수행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3.여비	⑧ 국내여비	•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 한도 내 실비 인정
4.유형자산	⑨ 자산취득비	•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등 • 전산자원(HW, SW, 네트워크 장비 등)	※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자산취득이 완료되어야 함
5. 간접비	⑩ 기타운영비	•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경비	※ 간접비 비율은 국비 지원금액 대비 5% 이내